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중간지원조직을”을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단체 등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회적금융”이란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금융을 말한다.

제4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제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 구청장은 기금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자금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삭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